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2도163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
피 고 인 피고인  
상 고 인 검사  
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(국선)  
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. 11. 23. 선고 (창원)2022노1 판결  
판 결 선 고 2024. 8. 29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0조 제2호는 '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·알선한 자'를 처벌하고 있다. 위 규정의 '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'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



대법관      노경필 \_\_\_\_\_